제 0778-01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대림제지 -

2023. 12.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결정번호 제0778-01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검토 결과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 호 (사업장명칭)	(주)대림제지	신청서 접수번호	A2023891033
성 명 (대표자)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124-81-32409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누읍동 7번지)	전화번호	031-373-7670
업 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검토 결과

• 검토 대상	(주)대림제지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검토 결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

※ 첨부서류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10㎜×297㎜[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제 0778-01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명세서

-(주)대림제지 -

2023. 12.

환경부

목 차

1. 허가결정 ····· 1

2. 허가대상 ····· 5

2.1 통합허가 공정의 대분류 ····· 7

2.2 통합허가 대분류 공정 설명 ····· 8

2.3 통합허가 대상시설 등 ····· 9

2.4 통합허가 비대상시설 주요시설 ····· 28

3.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등 ····· 35

3.1 허가조건 ····· 37

3.2 허가배출기준 ····· 38

3.3 자가측정 ····· 46

4. 사후관리 ····· 49

4.1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 51

5. 허가경과 및 행정절차 등 ····· 55

5.1 허가경과 ····· 57

5.2 향후 행정절차 ····· 59

5.3 안내사항 ····· 61

1. 허가결정

1. 허가결정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대림제지가 2023년 11월 07일 제출한 (**신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023년 12월 14일 허가한다.

허가대상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사업장)	㈜대림제지
대표자 성명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4-81-32409
전화번호	031-373-7670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누읍동 7번지)
업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종 규모	대기 1종(467.04톤/년), 수질 2종(1887m^3/일)
통합허가에 포함되는 환경허가의 종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 폐기물처리시설
생산품	골판지원지 : 1,054톤/일

이 허가는 환경오염시설법 제4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검토 결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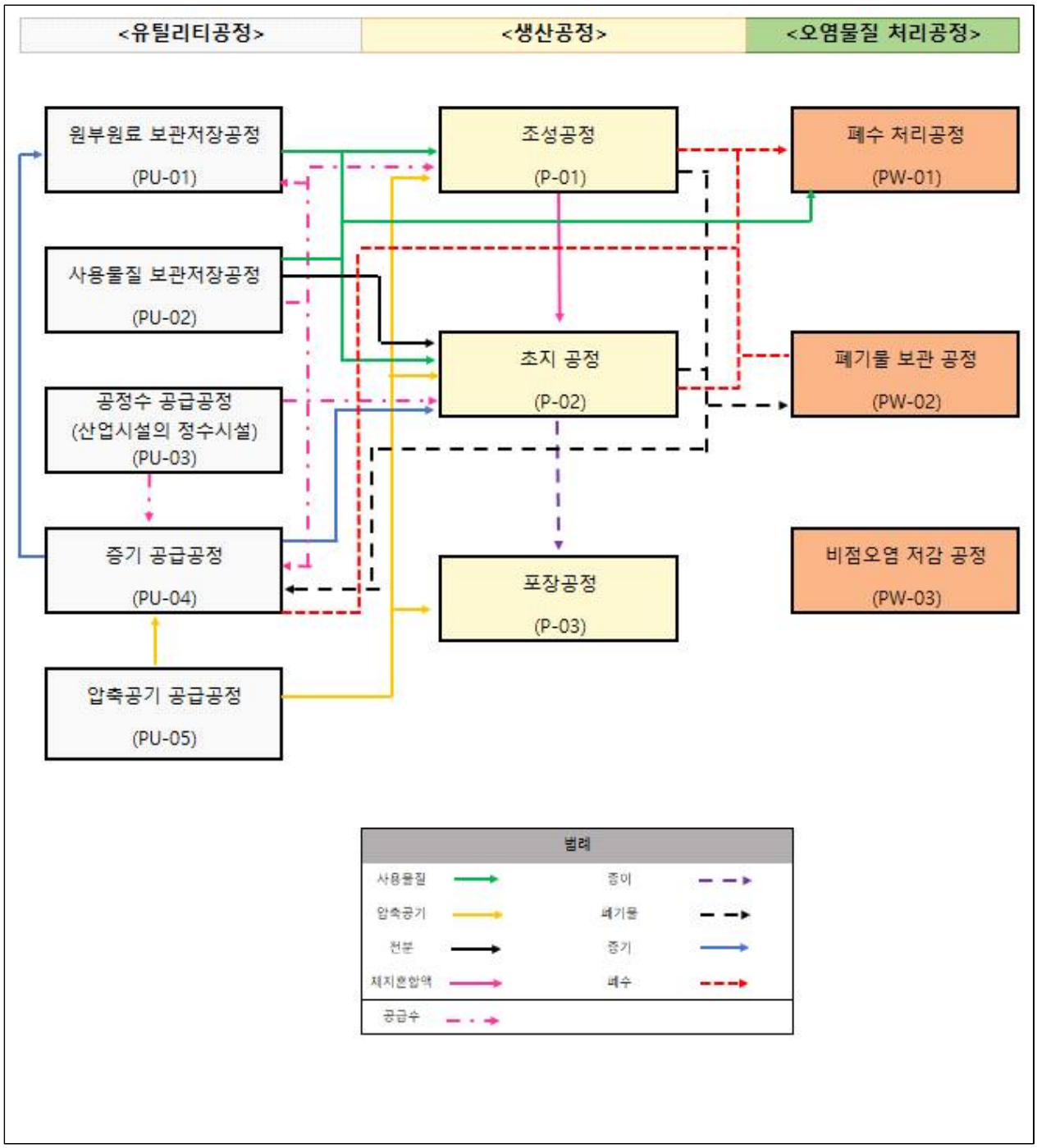
2023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2. 허가대상

2. 허가대상

2.1 통합허가 공정의 대분류



2.2 통합허가 대분류 공정 설명

구분	공정번호	공정명	공정설명
유틸리티	PU-01	원료 보관저장공정	○ 제품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저장보관하는 공정
	PU-02	사용물질 보관저장공정	○ 제품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 약품을 저장보관하는 공정
	PU-03	공정수 공급공정	○ 각 공정에 연수, 공정수, 하천수, 백수를 공급하는 공정
	PU-04	증기 공급공정	○ 소각열회수시설, 목재펠릿 사용시설에서 스팀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정
	PU-05	압축공기 제조공정	○ 공기를 압축시켜 건조, 냉각을 거쳐 유분,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각 공정으로 공급하는 공정.
생산공정	P-01	조성공정	○ 고지를 원료로 골판지원지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해리, 정선과정을 포함됨.
	P-02	초지공정	○ 조성공정을 거친 제지혼합액을 초조, 탈수, 건조공정을 통해 골판지원지로 만드는 공정.
	P-03	포장공정	○ 생산품을 권취 및 재단하여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환경오염처리공정	PW-01	폐수 처리공정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 또는 재이용하는 공정
	PW-02	폐기물 처리공정	○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제외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공정 ○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가 전량 위탁처리. 폐합성수지는 임시 보관하였다가 소각처리함.
	PW-03	비점오염원 처리공정	○ 공정 내 포장도로, 원료 야적장, 지붕 등의 시설에서 우수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공정

2.3 통합허가 대상시설 등

사업자가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허가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아래와 같다. 또한 세부적인 공정의 흐름과 시설의 구성 및 배관 연결도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8장에 첨부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관련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시설기호의 설명>

1. 관리번호

관리번호는 해당시설이 배출시설인지 방지시설인지를 의미한다.

- 배출시설 : 배출시설관리번호는 'I+번호'로 표현
- 방지시설 : 방지시설관리번호는 'C+번호'로 표현

2. 시설번호

시설번호는 시설의 매체별 개별법상 해당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각 배출/방지시설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구분된 10개 인허가별 기호와 일련번호의 조합으로 작성된다.

<매체별 구분에 따른 시설번호 부여방법>

배출시설명	배출시설 번호	방지 및 저감시설 번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A-1, A-2, A-3…	AT-1, AT-2, AT-3…
악취 배출시설	O-1, O-2, O-3…	OT-1, OT-2, OT-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V-1,V-2, V-3…	VT-1, VT-2, VT-3…
소음진동 배출시설	N-1, N-2, N-3…	NT-1, NT-2, NT-3…
폐수 배출시설	W-1, W-2, W-3…	WT-1,2,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S-1, S-2, S-3…	ST-1, ST-2, ST-3…
비점오염원	Np-1, Np-2, Np-3…	NpR-1, NpR-2, NpR-3…
폐기물처리시설	WsD-1, WsD-2, WsD-3…	-
비산먼지 발생사업	Fp-1, Fp-2, Fp-3…	FpT-1, FpT-2, FpT-3…
비산배출시설	Ff-1, Ff-2, Ff-3…	FfT-1, FfT-2, FfT-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P-1, P-2, P-3 …	PT-1, PT-2, PT-3 …
☞ '폐기물발생시설'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설여부 파악을 위해 표기(Ws)		

(예1) 소각시설 I-01[A-1, W-1, O-1] : 관리번호 I-01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면서, 폐수배출시설이며, 동시에 악취배출시설

2.3.1 배출시설 등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U11002~3	PU-01-01	A-1,2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Wood Pellet 저장탱크)	507	㎥	2	대기	먼지	저장량	3.2 참고	C-PU11001 ↓ #A9	기존	대상	
I-PU12001	PU-01-02	A-3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전분 저장탱크)	138.16	㎥	1	대기	먼지	저장량	3.2 참고	C-PU12001 ↓ #A7	기존	대상	
C-PU21001	PU-02-01	W-1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Ammonia Sealing Tank)	0.3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저장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C-PU21002	PU-02-01	W-2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Ammonia Sealing Tank)	0.3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저장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U22006	PU-02-02	A-4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음이온응집제 혼합탱크)	4.5	㎥	1	대기	먼지	투입량	3.2 참고	C-PU22001 ↓ #A8	증설	대상	
I-PU23005	PU-02-03	A-5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보류제 혼합탱크)	7	㎥	1	대기	먼지	투입량	3.2 참고	C-PU22001 ↓ #A8	증설	대상	
I-PU23006	PU-02-03	A-6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벤토나이트 혼합탱크)	17.1	㎥	1	대기	먼지	투입량	3.2 참고	C-PU22001 ↓ #A8	증설	대상	
I-PU31001	PU-03-01	W-3	경수 연화설비 (목제펠릿 사용시설 경수 연화설비)	20	톤/시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가동시간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U33002	PU-03-03	W-4	여과시설 (여과필터)	0.7	㎥/분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유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U41001	PU-04-01	A-7	파쇄시설	150	kw	1	대기	먼지	가동시간	3.2 참고	C-PW21001 ↓ #A2	기존	대상	
		O-1					악취	복합악취						
		WsD-1					-	-			-			
I-PU41005	PU-04-01	A-8	소각열회수시설 (소각로)	3.5	톤/hr	1	대기	먼지 외 24종[주3)]	가동시간	3.2 참고	C-PW21002 ↓ #A1	기존	대상	
		P-1					잔류성 오염물질	다이옥신						
		O-2					악취	복합악취						
		Ws-1					폐기물	바닥재		3.2 참고	위탁처리		비대상	
I-PU41007	PU-04-01	W-5	저장시설 (바닥재 냉각수조)	1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가동시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U41008	PU-04-01	W-7	소각열회수시설 (폐열보일러)	12	톤/hr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스팀 생산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2					폐기물	비산재			위탁처리		비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U41009	PU-04-01	W-8	소각열회수시설 (폐열보일러)	27	톤/hr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스팀 생산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3					폐기물	비산재			위탁처리		비대상	
I-PU42001,2	PU-04-02	A-9,10	목재펠릿 사용시설 (WOOD PELLET BOILER)	10	톤/시	2	대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연료 사용량	3.2 참고	C-PU41001,2 ↓ #A6	기존	대상	
		W-10,1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W1		대상	
		Ws-7,8					폐기물	바닥재			위탁처리		비대상	
I-PO11001	P-01-01	W-12	기타시설 (해리시설) (N LD PULPER)	60	㎥	1	폐수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원료 투입량, 전력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13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1002	P-01-01	W-13	선별시설 (N.DETRASHER)	1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03	P-01-01	W-14	분리시설 (SAND SEPARATOR)	1.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수분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14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1004	P-01-01	W-15	선별시설 (DRUM SCREEN)	20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11005	P-01-01	W-16	분리시설 (SAND SEPARATOR)	1.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수분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15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1006,7	P-01-01	W-17,18	선별시설 (PLPER 1H.D CLEANER) (1st stage-DR400/15)	1.02	㎥/분	2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09	P-01-01	W-19	선별시설 (N FRACTIONATOR)	11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10	P-01-01	W-20	농축시설 (SF DISC FILTER)	280	톤/일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12	P-01-01	W-21	선별시설 (PULPER 1HD CLEANER) (2nd stage-ks250/6)	0.3	㎥/분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13	P-01-01	W-22	선별시설 (N 1ST COARSE SCREEN)	11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15~32	P-01-01	W-23~40	선별시설 (TOP 1ST LDC)	28	㎥/분	18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35	P-01-01	W-41	선별시설 (NO2. COMBI SORTER)	9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36	P-01-01	W-42	선별시설 (3nd SLOT SCREEN)	22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11037	P-01-01	W-43	선별시설 (FINE SCREEN)	11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38~53	P-01-01	W-44~59	선별시설 (TOP 2ND LDC)	40	㎥/분	16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54	P-01-01	W-60	농축시설 (LF DISC FILTER)	103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1056	P-01-01	W-61	프레스 (BEL PRESS)	7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D-2					-	-			-			
		Ws-16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비대상	
I-PO12001	P-01-02	W-62	기타시설 (해리시설) (SIGMA PULPER)	60	㎥	1	폐수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원료 투입량, 전력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18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2002	P-01-02	W-63	선별시설 (SIGMA DETRASHER)	1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03~5	P-01-02	W-64~66	선별시설 (PLPER 1H.D CLEANER) (1st stage-DR400/15)	1.02	㎥/분	3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12007	P-01-02	W-67	선별시설 (1ST COARSE SCREEN)	11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08	P-01-02	W-68	선별시설 (PULPER 1HD CLEANER) (2nd STAGE)	0.3	㎥/분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09	P-01-02	W-69	분리시설 (HDC SAND SEPORATOR)	1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수분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19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2010	P-01-02	W-70	기타시설 (SUMP PIT)	0.1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저장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12	P-01-02	W-71	선별시설 (2nd HOLE SCREEN)	4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14	P-01-02	W-72	선별시설 (NO1. COMBI SORTER)	9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15	P-01-02	W-73	선별시설 (NO3. COMBI SORTER)	9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17~46	P-01-02	W-74~103	선별시설 (1ST LD CLEANER)	28	㎥/분	30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47~54	P-01-02	W-104~111	선별시설 (2nd LD CLEANER)	10	㎥/분	8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12055~56	P-01-02	W-112,113	선별시설 (3nd LD CLEANER)	3	㎥/분	2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57	P-01-02	W-114	분리시설 (LDC SAND SEPORATOR)	100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58	P-01-02	W-115	프레스 (LDC SAND SEPORATOR SCREW PRESS)	5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발생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20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12060	P-01-02	W-116	선별시설 (1ST SLOT SCREEN)	160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61	P-01-02	W-117	농축시설 (NO1 DISC FILTER)	50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64	P-01-02	W-118	선별시설 (2nd SLOT SCREEN)	4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65	P-01-02	W-119	선별시설 (REJECT SCREEN)	5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67	P-01-02	W-120	선별시설 (E MAXITRASHER)	7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12068	P-01-02	W-121	선별시설 (E MAXI SEPORATOR)	37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12070	P-01-02	W-122	선별시설 (2nd SLOT SCREEN)	5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가동중지
I-PO12073	P-01-02	W-123	농축시설 (NO2 DISC FILTER)	11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04	P-02-01	W-124	선별시설 (TOP LAMORT SCREEN)	1.0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07	P-02-01	W-125	기타시설 (TOP Head Box)	0.3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09	P-02-01	W-126	저장시설 (SEAL PIT #2)	50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수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10	P-02-01	W-127	선별시설 (TOP CLEANER)	0.3	㎥/분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11	P-02-01	W-128	분리시설 (SAND SEPARATOR)	1.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Ws-21					폐기물	폐토사			위탁처리		비대상	
I-PO21012	P-02-01	W-129	선별시설 (DILUTION SCREEN)	4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1013	P-02-01	O-3	기타시설 (TOP WIRE)	112.5	㎡	1	악취	복합악취	가동시간	3.2 참고	#O2	기존	대상	
		W-130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22004	P-02-02	W-131	선별시설 (BOTTOM LAMORT SCREEN)	2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2006	P-02-02	W-132	선별시설 (BOTTOM 2nd SCREEN)	45	kw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압력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2007	P-02-02	W-133	기타시설 (BOTTOM HEAD BOX)	1.05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농도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2010	P-02-02	O-4	기타시설 (BOTTOM WIRE)	239.2	㎡	1	악취	복합악취	가동시간	3.2 참고	#O2	기존	대상	
		W-134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대상	
I-PO23001	P-02-03	O-5	탈수시설 (Press)	1620	㎥	1	악취	복합악취	선압	3.2 참고	#O3	기존	대상	
		W-135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3002	P-02-03	A-11	건조시설 (Dryer)	2318	㎥	1	대기	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브롬화합물,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총탄화수소	온도, 압력	3.2 참고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 #A3,4	기존	대상	
		O-6					악취	복합악취					대상	
		W-136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대상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배출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인허가 항목	오염물질						
I-PO23003	P-02-03	W-137	도포시설 (Size Press)	764	kg/분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도포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O23004	P-02-03	A-12	건조시설 (After Dryer)	1524	㎥	1	대기	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브롬화합물,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총탄화수소	온도, 압력	3.2 참고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 #A5	기존	대상	
		O-7					악취	복합악취					대상	
I-PW21002~4	PW-02-01	W-142~144	폐기물 보관시설 (폐토사 임시보관)	136.5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보관량	3.2 참고	-	기존	대상	
I-PW21005	PW-02-01	W-145	폐기물 보관시설 (폐토사)	50.25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보관량	3.2 참고	-	기존	대상	
I-PW21006	PW-02-01	W-146	폐기물 보관시설 (바닥재)	52.5	㎥	1	수질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보관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I-PW21008	PW-02-01	O-28	폐기물 보관시설 (폐합성수지류)	418	㎥	1	악취	복합악취	보관량	3.2 참고	연소용공기	기존	대상	
I-PW31001	PW-03-01	Np-1~3	기타시설	43,718	㎥	1	비점 오염물질	-	-	3.2 참고	#W1	기존	대상	

주1)

pH, BOD, TOC, SS, T-N, T-P, N-H(광/동), 니켈, 용해성망간함유량, 바륨화합물, 플로오르(불소)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크롬함유량,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자일렌, 페놀류,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비소함유량, 수은함유량,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함유량,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레늄함유량,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함유량, 시안함유량, 안티몬, 펜타클로로페놀, PCB함유량,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주석, 온도, 페놀, 색도

주2)

pH, BOD, TOC, SS, T-N, T-P, N-H(광/동), 니켈, 용해성망간함유량, 바륨화합물, 플로오르(불소)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크롬함유량,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자일렌,

페놀류,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비소함유량, 수은함유량,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함유량,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레늄함유량,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함유량, 시안함유량, 안티몬, 펜타클로로페놀, PCB함유량,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주석, 온도, 페놀

주3)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니켈화합물, 구리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아연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시안화수소, 에틸벤젠,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벤젠,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브롬화합물, 황화수소, 총탄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2.3.2 방지(저감)시설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C-PU11001	PU-01-01	AT-1	여과집진시설	80	㎥/min	1	먼지	전력량	3.2 참고	#A9	증설	대상	-	-
C-PU12001	PU-01-02	AT-2	여과집진시설	12	㎥/min	1	먼지	전력량	3.2 참고	#A7	기존	대상	-	-
C-PU22001	PU-02-03	AT-3	여과집진시설	120	㎥/min	1	먼지	전력량	3.2 참고	#A8	증설	대상	-	-
C-PU41001	PU-04-01	AT-4	흡수에의한시설	160	㎥/min	1	먼지	전력량	3.2 참고	#A2	기존	대상	-	-
		OT-1					복합악취							
		W-6					발생물질 :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W1				
C-PU41002	PU-04-01	AT-5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2987	㎥/min	1	질소산화물	약품 투입량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OT-2					복합악취							
C-PU41003	PU-04-01	AT-6	원심력집진시설	2280	㎥/min	1	먼지	온도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Ws-4					발생물질 : 폐기물			위탁처리				
C-PU41004	PU-04-01	AT-7	흡수에의한시설	1510	㎥/min	1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	약품 투입량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OT-3					복합악취							
		Ws-5					발생물질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C-PU41005	PU-04-01	AT-8	여과집진시설	1350	㎥/min	1	먼지 외 21종[주3)]	차압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PT-1					다이옥신							
		Ws-6					발생물질 : 폐기물			위탁처리				
C-PU41006	PU-04-01	AT-9	선택적촉매환원시설	1340	㎥/min	1	질소산화물	약품 투입량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PT-2					다이옥신							
		OT-4					복합악취							
C-PU41007	PU-04-01	AT-10	흡수에의한시설	2200	㎥/min	1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 니켈화합물, 구리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아연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불소	약품 투입량	3.2 참고	#A1	기존	대상	-	-
		OT-5					복합악취							
		W-10					발생물질 : 수소이온농도 등 53종[주2)]			#W1				
C-PU42001,2	PU-04-02	AT-11,12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984.4	㎥/min	2	질소산화물	약품 투입량	3.2 참고	#A6	기존	대상	-	-
C-PU42003,4	PU-04-02	AT-13,14	원심력 집진시설	450	㎥/min	2	먼지	온도	3.2 참고	#A6	기존	대상	-	-
		Ws-9,10					발생물질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C-PU42005,6	PU-04-01	AT-15,16 Ws-11,12	여과집진시설	450	㎥/min	2	먼지 발생물질 : 폐기물	차압	3.2 참고	#A6 위탁처리	기존	대상	-	-
C-PU42007	PU-04-01	AT-17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	900	㎥/min	1	질소산화물	약품 투입량	3.2 참고	#A6	기존	대상	-	-
C-PO11001	P-01-01	OT-6 Ws-17	흡착에 의한 시설	250	㎥/min	1	복합악취 발생물질 : 폐기물	전력량	3.2 참고	#O1 위탁처리	기존	대상	-	-
C-PO21001	P-02-01	OT-7	탈취제 분사시설	250	㎥/min	1	복합악취	약품 투입량	3.2 참고	#O2	기존	대상	-	-
C-PO23001	P-02-03	OT-8	탈취제 분사시설	390	㎥/min	1	복합악취	약품 투입량	3.2 참고	#O3	기존	대상	-	-
C-PO23002	P-02-03	OT-9	탈취제 분사시설	4100	㎥/min	1	복합악취	약품 투입량	3.2 참고	#A3,#A4	기존	대상	-	-
C-PO23003	P-02-03	OT-10	탈취제 분사시설	1500	㎥/min	1	복합악취	약품 투입량	3.2 참고	#A5	기존	대상	-	-
C-PW11001	PW-01-01	O-8 WT-1	집수조 (백수타워)	77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수위	3.2 참고	- #W1	기존	대상	-	-
C-PW11002	PW-01-01	WT-2	스크린형 시설	2.6	㎥	1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가동	3.2	#W1	기존	대상	-	-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스텝스크린)					시간	참고					
C-PW11003	PW-01-01	O-9	침사시설 (침사지)	4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3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04	PW-01-01	O-10	원심분리형 크리너	8000	㎥/일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4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Ws-22					발생물질 : 폐토사			위탁처리				
C-PW11005~6	PW-01-01	O-11,12	유량조정시설 (집수조)	45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위	3.2 참고	#O1	기존	대상	-	-
		WT-5,6		1170	㎥	1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07	PW-01-01	WT-7	반응시설 (파이프 반응기)	13.4	㎥	1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유량	3.2 참고	#W1	기존	대상	-	-
C-PW11008,9	PW-01-01	O-13,14	가압부상조	156.4 67	㎥ ㎥	1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유량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8,9 W-138,139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0	PW-01-01	O-15	1차 처리수조	32.4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위	3.2	-	기존	대상	-	-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참고					
		WT-10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1	PW-01-01	-	기타시설 (냉각탑)	8000	㎥/일	-	-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비대상	-	-
C-PW11012	PW-01-01	O-16	폭기시설 (1차 폭기조)	567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온도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11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3	PW-01-01	O-17	폭기시설 (2차 폭기조)	1034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온도	3.2 참고	#O4	기존	대상	-	-
		WT-12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4	PW-01-01	O-18	폭기시설 (3차 폭기조)	149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온도	3.2 참고	#O1	기존	대상	-	-
		WT-13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5	PW-01-01	O-19	침전시설 (경사판 침전조)	3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유량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14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6	PW-01-01	O-20	침전시설 (2차 침전조)	322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15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11017	PW-01-01	O-21	2차 처리수조	20.4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대상	-	-
		WT-16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C-PW11018	PW-01-01	O-22 WT-17	유량조절시설	0.9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가동 시간	3.2 참고	- #W1	기존	대상	-	-
C-PW11019	PW-01-01	O-23 WT-18	반응시설 (펜톤 반응조)	259.2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가동 시간	3.2 참고	#O1 #W1	기존	대상	-	-
C-PW11020	PW-01-01	O-24 WT-19	침전시설 (3차 침전조)	250.4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가동 시간	3.2 참고	- #W1	기존	대상	-	-
C-PW11021	PW-01-01	O-25 WT-20	방류조	0.5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유량	3.2 참고	- #W1	기존	대상	-	-
C-PW12001	PW-01-02	O-26 WT-21 W-140 Ws-23	탈수시설	-	톤/회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발생물질 : 폐기물	가동 시간	3.2 참고	- #W1 위탁처리	기존	대상	-	-
C-PW12002	PW-01-02	O-27	부상슬러지 탱크	20	㎥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대상	-	-

관리 번호	공정 번호	시설 번호	시설명	용량	단위	수량	처리오염물질등	운전 인자	설치 지점	배출 (방류)구 번호	변경 사항	법적 대상 여부	P&ID NO.	비고
		WT-22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Ws-24					발생물질 : 폐기물			위탁처리				
C-PW12003	PW-01-02	-	기타시설 (냉각탑)	600	㎥/일	1	-	가동 시간	3.2 참고	-	기존	비대상	-	-
C-PW13001	PW-01-03	OT-11	흡수에의한시설	600	㎥/분	1	발생물질 : 복합악취	전력량	3.2 참고	#O4	기존	대상	-	-
		W-141					수소이온농도 등 54종주1)			#W1				
C-PW31001~3	PW-03-01	NpR-1	여과형 시설	150	㎥/hr	1	발생물질 : 폐기물	-	참고	위탁처리	기존	대상	-	-
		NpR-2,3		50	㎥/hr	2	발생물질 : 비점오염물질			#W1				

주1)
pH, BOD, TOC, SS, T-N, T-P, N-H(광/동), 니켈, 용해성망간함유량, 바륨화합물, 플로오르(불소)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크롬함유량,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자일렌, 페놀류,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비소함유량, 수은함유량,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함유량,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레늄함유량,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함유량, 시안함유량, 안티몬, 펜타클로로페놀, PCB함유량,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주석, 온도, 페놀, 색도

주2)
pH, BOD, TOC, SS, T-N, T-P, N-H(광/동), 니켈, 용해성망간함유량, 바륨화합물, 플로오르(불소)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함유량, 용해성철함유량, 크롬함유량,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자일렌, 페놀류,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비소함유량, 수은함유량,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함유량,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레늄함유량,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함유량, 시안함유량, 안티몬, 펜타클로로페놀, PCB함유량,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주석, 온도, 페놀

주3)
먼지, 니켈화합물, 구리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아연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에틸벤젠, 암모니아, 불소, 포름알데히드, 수은, 비소, 벤젠,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브롬,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2.4 통합허가 비대상 주요시설

통합법 제6조(통합허가)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려는 배출시설등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관리번호	공정번호	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P&ID 번호)	비대상 근거
I-PU21008	PU-02-01	저장시설 (가성소다 저장탱크)	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용적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시설은 제외
I-PU21003	PU-02-01	저장시설 (활성탄 저장탱크)	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용적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시설은 제외

<대기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 공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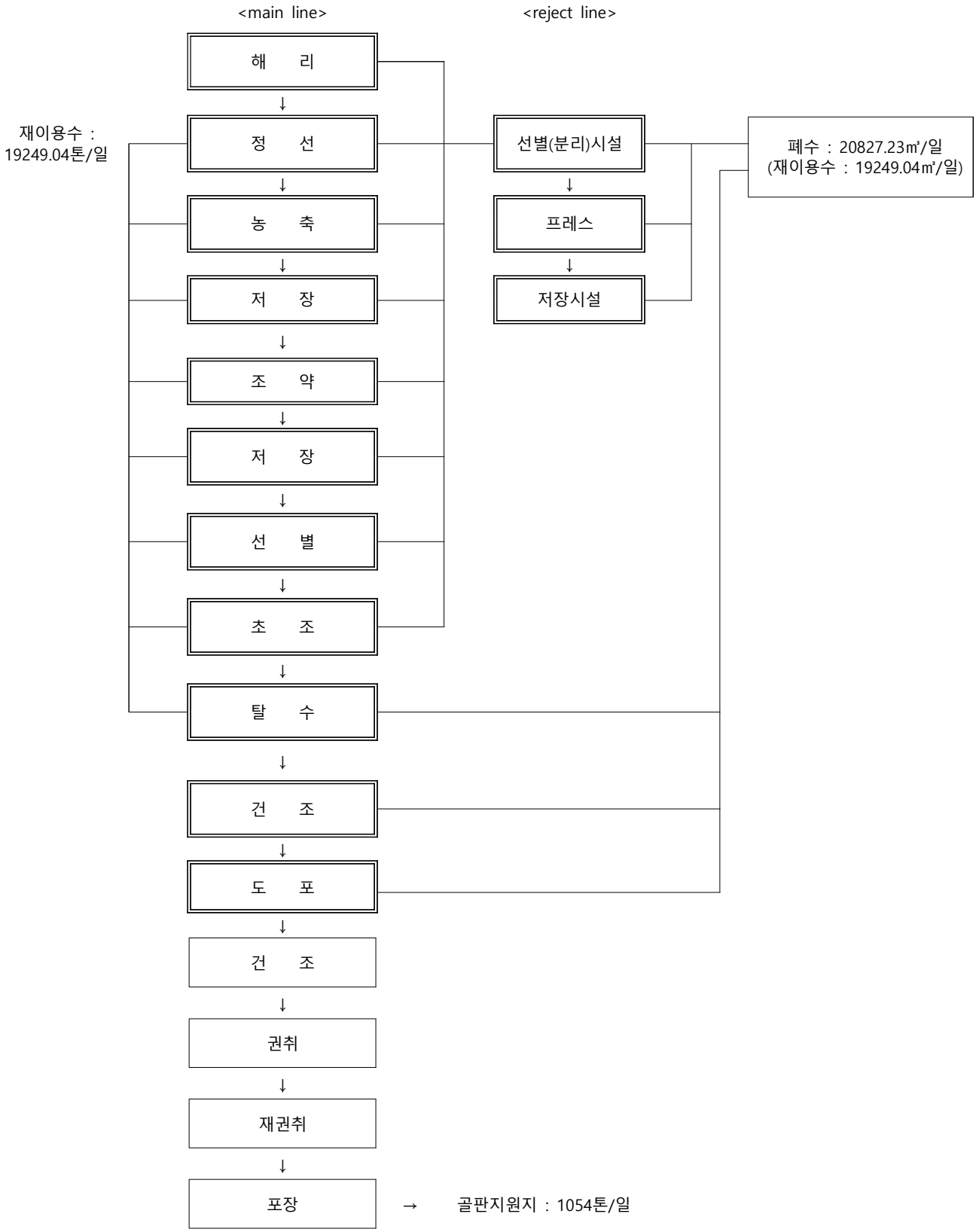
1) 대기 오염물질처리 공정흐름도

배출시설명	관리번호	용량	방지시설명	관리번호	용량(㎥/분)	배출구번호
소각열회수시설	I-PU41004	3.5톤/시	선택적 비촉매환원시설(SNCR)	C-PU41002	3468	#A1(1종) (TMS)
			원심력집진시설	C-PU41003	2280	
			흡수에의한시설 (반건식 반응탑)	C-PU41004	1510	
			여과집진시설	C-PU41005	1350	
			선택적촉매환원시설	C-PU41006	1340	
			흡수에의한시설(습식세정탑)	C-PU41007	2200	
파쇄시설	I-PU41001	150kW	흡수에의한시설	C-PU41001	160	#A2
건조시설	I-PO23002	2,318㎥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A3, 4
건조시설	I-PO23004	1,524㎥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A5
목재펠릿 사용시설	I-PU42001, 2	10톤/시×2	선택적 비촉매환원시설(SNCR)	C-PU42001,2	984.4 x 2EA	#A6 (TMS)
			원심력집진시설	C-PU42003,4	450 x 2EA	
			여과집진시설	C-PU42005,6	450 x 2EA	
			선택적촉매환원시설	C-PU42007	900 x 1EA	

배출시설명	관리번호	용량	방지시설명	관리번호	용량(㎥/분)	배출구번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전분)	I-PU12001	138.16㎥	여과집진시설	C-PU12001	12	#A7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I-PU22006	4.5㎥	여과집진시설	C-PU22001	120	#A8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I-PU23005	7㎥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I-PU23006	17.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목재펠릿)	I-PU11002, 3	507㎥×2	여과집진시설	C-PU11001	80	#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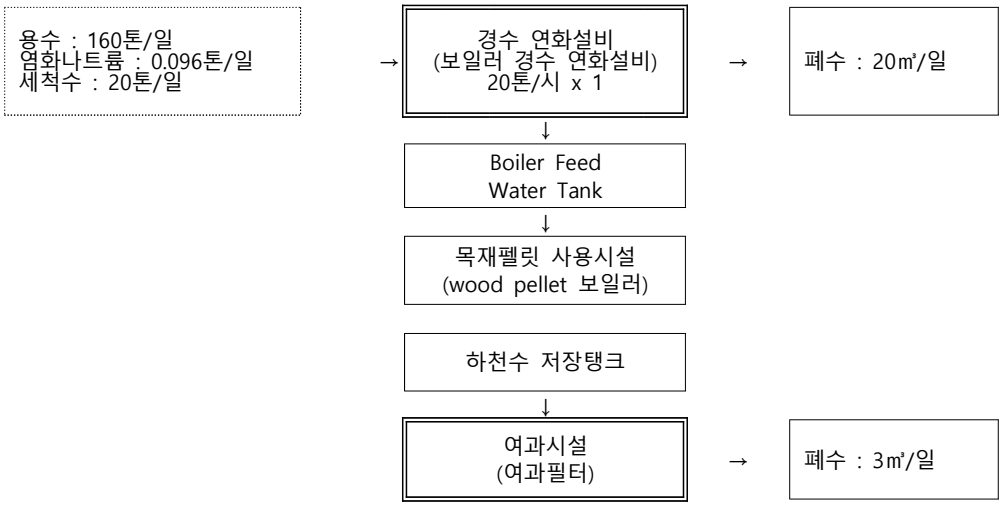
2) 폐수 배출시설 흐름도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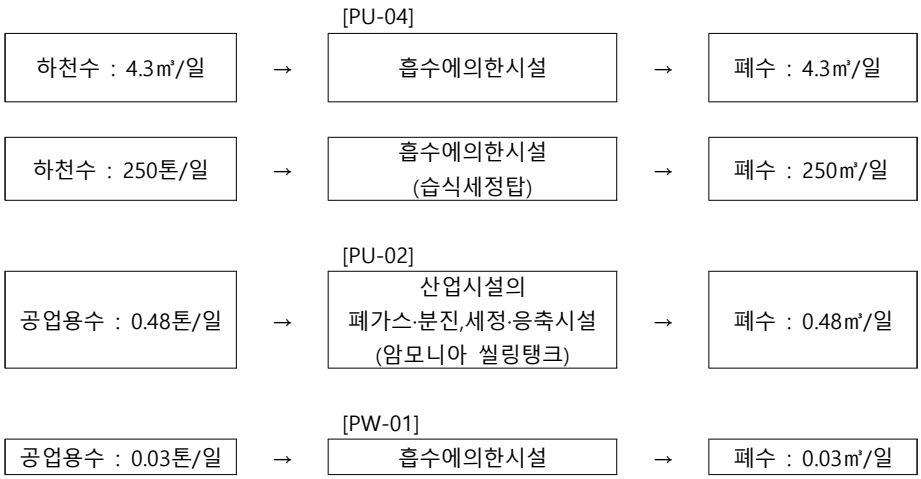
▣ 폐수(20827.23㎥/일)
(19249.04㎥/일 : 공정 재이용)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 폐수(23㎥/일)

77. 산업시설의 폐가스 · 분진, 세정 · 응축시설



▣ 폐수(254.81㎥/일)

82.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PU-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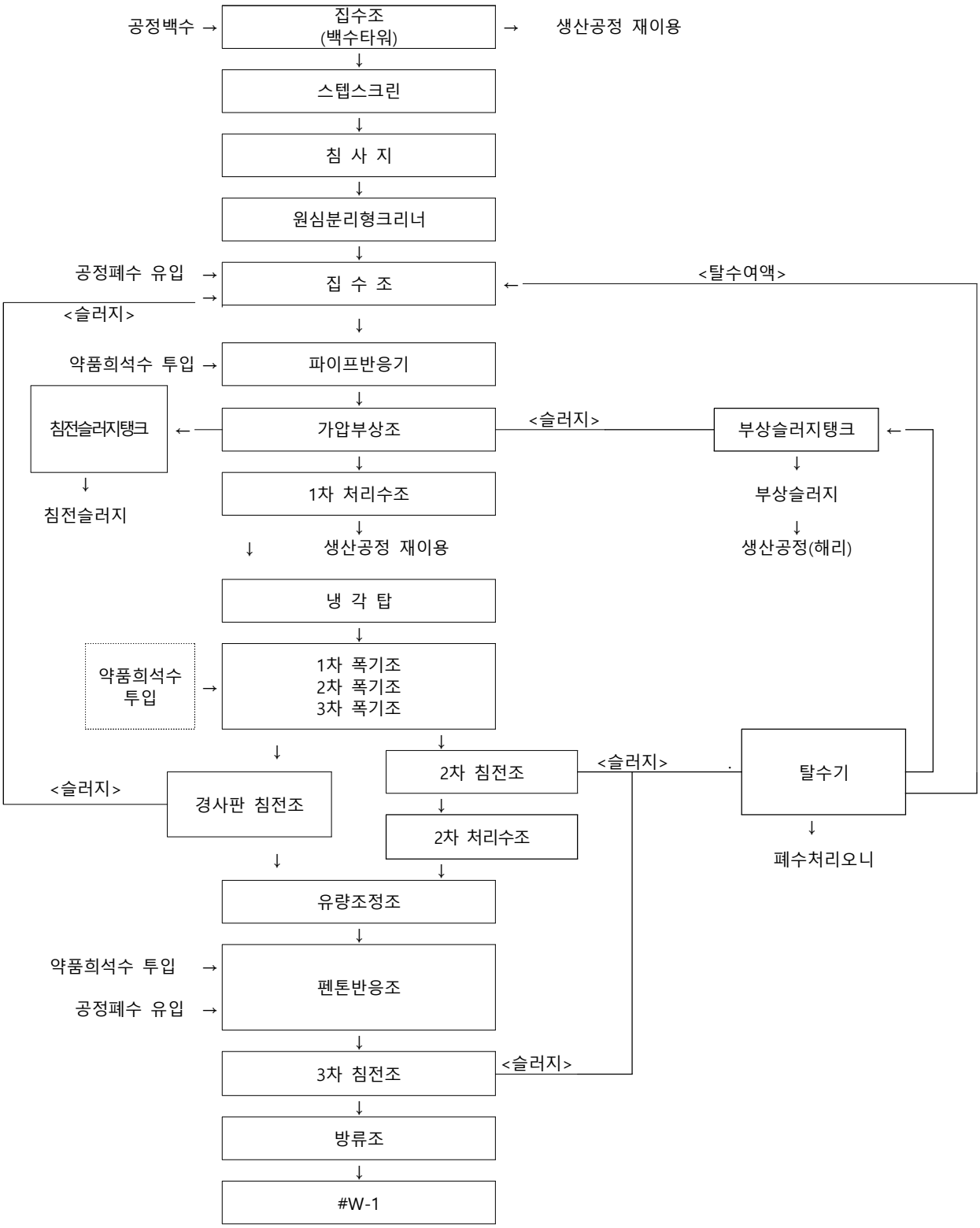
소각재 냉각폐수	→	폐수 : 3.0㎥/일
소각열회수시설 (폐열보일러) 12톤/시 x 1 27톤/시 x 1	→	폐수 : 2.0㎥/일
목재펠릿 사용시설 (wood pellet 보일러)	→	폐수 : 20㎥/일

[PW-02]

폐기물 보관시설 (폐토사 임시보관장)	→	폐수 : 4㎥/일
폐기물 보관시설 (폐토사 보관시설)	→	폐수 : 1㎥/일
폐기물 보관시설 (바닥재 보관시설)	→	폐수 : 1㎥/일

▣ 폐수(31㎥/일)

2) 폐수처리 공정 흐름도


공정백수
집수조
(백수타워)
생산공정 재이용
스텝스크린
침 사 지
원심분리형크리너
공정폐수 유입
집 수 조
<탈수여액>
<슬러지>
약품희석수 투입
파이프반응기
침전슬러지탱크
가압부상조
<슬러지>
부상슬러지탱크
침전슬러지
1차 처리수조
부상슬러지
생산공정 재이용
생산공정(해리)
냉 각 탑
약품희석수
투입
1차 폭기조
2차 폭기조
3차 폭기조
2차 침전조
<슬러지>
탈수기
<슬러지>
경사판 침전조
2차 처리수조
폐수처리오니
유량조정조
약품희석수 투입
펜톤반응조
공정폐수 유입
3차 침전조
<슬러지>
방류조
#W-1

3.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등

3.1 허가조건

사업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통합허가)제3항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허가조건은 타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유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1.1 사업장의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폐기물 보관시설(I-PW21008) 등은 상시 밀폐 운영하고, 고지 보관장, 탈수시설, 건조시설 등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탈취제 분사 등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2 사업자는 3.2장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발생 등으로 환경부에서 자가측정을 요청할 경우「3.2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허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의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변경허가)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3.2.1 대기오염물질

㈜대림제지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수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한 환경의 질 목표수준 등에 따라 먼지 등 24개 물질에 대해 배출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산정하였다.

배출영향분석 대상 24개 물질 중 먼지 등 22개 물질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므로 최대배출기준을 허가 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소 및 니켈화합물은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

배출구 번호	주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단위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예상배출농도	비고
#A1 (TMS-1)	소각열회수시설(소각로) [I-PU41004, 3.5톤/시]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C-PU41002) 3468㎥/분 ↓ 원심력집진시설 (C-PU41003) 2280㎥/분 ↓ 흡수에의한시설 (C-PU41004) 1510㎥/분 ↓ 여과집진시설 (C-PU41005) 1350㎥/분 ↓ 선택적촉매환원시설 (C-PU41006) 1340㎥/분 ↓ 흡수에의한시설 (C-PU41007) 2200㎥/분	황산화물	ppm	20(12)	20(12)	1.27(12)	최대배출기준
			일산화탄소	ppm	50(12)	50(12)	9(12)	최대배출기준
			질소산화물	ppm	50(12)	50(12)	12.7(12)	최대배출기준
			납화합물	mg/Sm³	0.2(12)	0.2(12)	0.011(12)	최대배출기준
			벤젠	ppm	6	6	1.66	최대배출기준
			먼지	mg/Sm³	15(12)	15(12)	0.0087(12)	최대배출기준
			아연화합물	mg/Sm³	4	4	0.02	최대배출기준
			암모니아	ppm	20(12)	20(12)	1.54(12)	최대배출기준
			크롬화합물	mg/Sm³	0.2(12)	0.2(12)	0.00012(12)	최대배출기준
			수은화합물	mg/Sm³	0.05(12)	0.05(12)	0.01(12)	최대배출기준
			구리화합물	mg/Sm³	4	4	0.0028	최대배출기준
			황화수소	ppm	2	2	1.21	최대배출기준
			디클로로메탄	ppm	50	50	0.01	최대배출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50	50	0.0006	최대배출기준
			비소화합물	ppm	0.2(12)	0.14(12)	0.01(12)	한계배출기준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³	2	1.4	0.000054	한계배출기준
			카드뮴화합물	mg/Sm³	0.02(12)	0.02(12)	0.000006(12)	최대배출기준
			브롬화합물	ppm	3	3	0.012	최대배출기준

배출구 번호	주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단위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예상배출농도	비고
			불소화합물	ppm	2(12)	2(12)	0.04(12)	최대배출기준
			시안화수소	ppm	4	4	0.57	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12(12)	12(12)	6.36(12)	최대배출기준
			포름알데히드	ppm	8	8	0.34	최대배출기준
			에틸벤젠	ppm	23	23	0.01	최대배출기준
			아세트알데히드	ppm	10	10	0.00027	최대배출기준
			탄화수소	ppm	-	-	0.06	-
#A2	파쇄시설 [I-PU41001, 150kW]	흡수에의한시설 [C-PU41001, 160㎥/분]	먼지	mg/Sm³	30	30	1.2	최대배출기준
#A3,4	건조시설 [I-PO23002, 2318㎡]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먼지	mg/Sm³	30	30	1.8	최대배출기준
			암모니아	ppm	30	30	2.1	최대배출기준
			브롬화합물	ppm	3	3	1.7	최대배출기준
			불소화합물	ppm	2	2	0.23	최대배출기준
			시안화수소	ppm	4	4	0.07	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4	4	1.0	최대배출기준
			탄화수소	ppm	200	200	5.5	최대배출기준
#A5	건조시설 [I-PO23004, 1524㎡]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먼지	mg/Sm³	30	30	1.8	최대배출기준
			암모니아	ppm	30	30	2.1	최대배출기준
			브롬화합물	ppm	3	3	1.7	최대배출기준
			불소화합물	ppm	2	2	0.23	최대배출기준
			시안화수소	ppm	4	4	0.07	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4	4	1.0	최대배출기준
			탄화수소	ppm	200	200	5.5	최대배출기준

배출구 번호	주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단위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예상배출농도	비고
#A6 (TMS-2)	목제펠릿 사용시설 [I-PU42001,2, 10톤/시×2]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 (C-PU42001,2) 984.4㎥/분x2 ↓ 원심력집진시설 (C-PU42003,4) 450㎥/분x2 ↓ 여과집진시설 (C-PU42005,6) 450㎥/분x2 ↓ 선책적촉매환원시설 (C-PU42007) 900㎥/분	황산화물	ppm	200	200	1.29	최대배출기준
			질소산화물	ppm	90(12)	90(12)	13.45(12)	최대배출기준
			먼지	mg/Sm³	25(12)	25(12)	0.12(12)	최대배출기준
			암모니아	ppm	30	30	15	최대배출기준
			일산화탄소	ppm	200(12)	200(12)	25.13(12)	최대배출기준
#A7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I-PU12001, 138.16㎥]	여과집진시설 (C-PU12001) 12㎥/분	먼지	mg/Sm³	30	30	10.11	최대배출기준
#A8	그 밖의 시설(혼합시설) [I-PU23006, 17.1㎥]	여과집진시설 (C-PU22001) 120㎥/분	먼지	mg/Sm³	30	30	3.8	최대배출기준
#A9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I-PU11002,3, 507㎥×2]	여과집진시설 (C-PU11001) 80㎥/분	먼지	mg/Sm³	30	30	17.87	최대배출기준

3.2.2 수질오염물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최종 오산천으로 최종방류되므로(#W1)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BOD, TOC, SS, T-N, T-P는 제외하고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안, 유기인, 니켈, 바륨, 1,4-다이옥산 등 5개 물질은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였다.

(단위 mg/L, 도)

배출구번호 (배출시설)	방지시설 (용량)	항 목	최대 배출기준	허가 배출기준	예상 배출농도
#W1	유량조정시설(C-PW11001) ↓ 스크린형시설(C-PW11002) ↓ 침사시설(C-PW11003) ↓ 원심분리형크리너(C-PW11004) ↓ 유량조정시설(C-PW11005,6) ↓ 반응시설(C-PW11007) ↓ 가압부상조(C-PW11008,9) ↓ 1차처리수조(C-PW11010) ↓ 폭기시설(C-PW11012~14) ↓ 침전시설(C-PW11015,16) ↓ 2차처리수조(C-PW11017) ↓ 유량조정시설(C-PW11018) ↓ 반응시설(C-PW11019) ↓ 침전시설(C-PW11020) ↓ 방류조(C-PW11021) ↓ #W1 (오산시환경사업소 유입) ↓ 오산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20	120	11.02
		총유기탄소량	75	75	39.18
		부유물질량	120	120	37.46
		총질소	60	60	6.63
		총인	8	8	1.35
		페놀류함유량	3	3	0.046
		페놀	1	1	-
		펜타클로로페놀	0.01	0.01	-
		시안함유량	1	0.7	0.0038
		크롬함유량	2	2	0.01
		용해성철함유량	10	10	0.013
		아연함유량	5	5	0.01
		구리(동)함유량	3	3	0.013
		카드뮴함유량	0.1	0.1	0.0002
		수은함유량	0.005	0.005	0.000012
		유기인함유량	1	0.7	-
		비소함유량	0.25	0.25	0.00057
		납함유량	0.5	0.5	0.00017
		6가크롬함유량	0.5	0.5	0.003
		용해성망간함유량	10	10	0.59
		플로오르(불소)함유량	15	15	0.29
		PCB함유량	0.003	0.003	-
		트리클로로에틸렌	0.3	0.3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0.1	-

배출구번호 (배출시설)	방지시설 (용량)	항 목	최대 배출기준	허가 배출기준	예상 배출농도
		음이온계면활성제	5	5	0.41
		벤젠	0.1	0.1	-
		디클로로메탄	0.2	0.2	0.031
		셀레늄함유량	1	1	0.00098
		사염화탄소	0.04	0.04	-
		1,1 - 디클로로에틸렌	0.3	0.3	-
		1,2 - 디클로로에탄	0.3	0.3	-
		클로로포름	0.8	0.8	0.3
		니켈	3.0	2.1	0.01
		바륨	10.0	7.0	0.12
		1,4 - 다이옥산	4.0	2.8	0.00012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2	0.2	0.00012
		염화비닐	0.5	0.5	-
		아크릴로니트릴	0.2	0.2	0.00076
		브로모포름	0.3	0.3	0.00012
		나프탈렌	0.5	0.5	0.000229
		폼알데하이드	5.0	5.0	1.17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3	0.3	0.038
		톨루엔	7.0	7.0	0.00085
		자일렌	5.0	5.0	-
		안티몬	0.2	0.2	-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6.63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5	5	0.65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30	30	25
		온도	40	40	38.4
		퍼클로레이트	0.3	0.3	-
		아크릴아미드	0.04	0.04	-
		스티렌	0.2	0.2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2	2	-
		주석	5	5	-
		색도	300	300	62

3.2.3 소음 진동

「소음 ·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농공단지)를 적용한다.

구분	배출지점	오염물질	단위	허가배출기준	비고
소음 및 진동	부지경계	소음	dB(A)	70	낮(06:00 - 18:00)
				65	저녁(18:00 - 24:00)
				60	밤(24:00 - 06:00)
	부지경계	진동	dB(V)	75	낮(06:00 - 22:00)
				70	밤(22:00 - 06:00)

3.2.4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소각시설 기준(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 신설시설)을 적용한다.

배출지점	오염물질	단위	허가배출기준
#A1	다이옥신	ng-TEQ/S㎥	1
#W1	다이옥신	pg-TEQ/L	10

3.2.5 악취

「악취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중 기타지역의 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배출지점	오염물질	단위	허가배출기준
악취	#A-1～5 #O-1～4	복합악취	배	400 이하
	부지경계 (#BO1)	복합악취	배	10 이하
		암모니아	ppm	1 이하
		메틸메르캅탄	ppm	0.002 이하
		황화수소	ppm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ppm	0.01 이하

구분	배출지점	오염물질	단위	허가배출기준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ppm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ppm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0.05 이하
		스타이렌	ppm	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ppm	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ppm	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ppm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ppm	0.003 이하
		톨루엔	ppm	10 이하
		자일렌	ppm	1 이하
		메틸에틸케톤	ppm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ppm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ppm	1 이하
		프로피온산	ppm	0.03 이하
		n-뷰틸산	ppm	0.001 이하
		n-발레르산	ppm	0.0009 이하
		i-발레르산	ppm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ppm	0.9 이하

3.3 자가측정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측정주기가 설정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자가측정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6]의 최소측정 주기를 따른다.

3.3.1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측정지점	항 목	측정 주기	비고
#A1[1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연속측정	TMS 부착
	3.2.1 대기오염물질 (TMS 측정항목 및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분기 1회 이상	자가측정
#A2[5종]	3.2.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
#A3[5종]	3.2.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
#A4[5종]	-	-	측정면제*
#A5[5종]	3.2.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
#A6[2종]	먼지, 질소산화물	연속측정	TMS 부착
	3.2.1 대기오염물질 (TMS 측정항목 및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분기 1회 이상	자가측정
#A7~9[5종]	3.2.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

* 배출구(#A3~4) : 대표 배출구 자가측정 결과를 동일 유형의 배출구 자가측정 결과로 갈음하되 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은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됨 → 대표 배출구 #3

○ 수질오염물질

측정지점	항 목	측정 주기	비고
#W1 (2종)	3.2.2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제외)	분기 1회 이상	자가측정

3.3.2 그 밖의 오염물질 등

○ 대기오염물질

측정 지점	항목	측정 주기
#A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20.7, 환경부)」에서 제시된 '24.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항목,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항목 및 다이옥신 제외 가능)	'24.6.30일까지 30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신규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매회 검출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3.3.3 소음・진동

측정지점	항 목	측정 주기	비고
부지경계 (#BN1)	소음 및 진동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

3.3.4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지점	항 목	측정주기	비고
#A1	다이옥신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W1	다이옥신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3.3.5 악취

측정지점	항 목	측정주기	비고
#O1~4 #A1~5	복합악취	분기 1회 이상	자가측정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분기 1회 이상	자가측정
		지정악취	필요시

4. 사후관리

4. 사후관리

4.1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림제지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제시한 환경사고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 및 대응방안과 사고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대응 매뉴얼 및 전담인력 배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히 반려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사업장의 운영관리 목표에 적합한 운영관리조직 및 인력계획을 수립, 이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환경기술 인력을 적정하게 선임하고 있다.

2) 그 외,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정상 운전 시에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대응하도록 계획하였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작동, 고장, 예기치 못한 유해물질 누출 등의 상황 발생시 점검상황과 대응계획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서 계획된 사고유형별 발생가능시설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환경사고시 비상연락 체계>



<주요 환경사고 시나리오별 대책>

사고유형	발생가능시설	사고 시나리오	대응계획
화재	소각동, 보일러 제지 생산시설 등	· 연료반입장, 제지 생산 건물 등에 화재 발생 · 보일러의 이상 압력상승 · 보일러 안전장치의 작동 불량에 의한 화재발생 · 충분히 냉각되지 못한 고온의 가스로 인해 여과포에서 화재 발생 · 제진 효율 저하로 먼지 과량 배출	(예방대책) 1. 보일러 압력경보장치 설치 2. 보일러 수동 안전장치 설치 3. 별도의 수동안전밸브 설치 4. 화재감시용 CCTV설치 5. 근무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고대책) 1. 회사 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 실시 및 소방서 신고 2. 관계기관 협조 3. 초기소화 실시인원 외 피난유도 4. 사망, 부상인원 파악 및 후송 5. 재산 피해상황 파악
폭발	폐기물소각시설 등	· 가열된 연소로의 압력조절장치 등의 고장으로 압력증가로 인한 폭발 · 가열된 고온·고압의 증기관이 지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파손되어 폭발됨	(예방대책) 1. 안전밸브 설치 2. 별도의 수동 안전밸브 설치 3. 주요배관 내진설계 기준에 맞는 배관 및 행거로 교체
			(사고대책) 1. 회사 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 실시 및 소방서 신고 2. 관계기관 협조 3. 초기소화 실시인원 외 피난유도 4. 사망, 부상인원 파악 및 후송 5. 재산 피해상황 파악
정전	사업소 내 전체설비	·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정전 발생	(예방대책) 1. 노후변압기 교체 2. 전기설비 점검 3. 비상발전기 점검
			(사고대책) 1. 비상발전기 가동 2. 임시공급설비 현장 동원
유출사고	저장시설 유류탱크 배관류	· 작업자 부주의, 탱크 부식,차량사고 ,화학물질,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	(예방대책) 1. 유해화하물질 안전작업절차 교육 2. 유해화학물질 배관 및 탱크 점검
			(사고대책) 1. 회사 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 실시 및 소방서 신고 2. 관계기관 협조 3. 초기소화 실시인원 외 피난유도 4. 사망, 부상인원 파악 및 후송 5. 재산 피해상황 파악

사고유형	발생가능시설	사고 시나리오	대응계획
자연재해	사업소 내 전체설비	· 태풍, 홍수 발생 · 지진발생	(예방대책) 1. 노후된 천장, 벽면, 배수로 등 점검 2. 비상시 대피요령 교육
			(사고대책) 1. 회사 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 실시 및 소방서 신고 2. 관계기관 협조 3. 피난유도 4. 사망, 부상인원 파악 및 후송 5. 재산 피해상황 파악
환경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배출시설 및 대기 방지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예방대책) 1. 정기적으로 기계장치 점검 2. 계획적으로 기계장치 보수 및 교체
			(사고대책) 1. 회사 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 실시 및 소방서 신고 2. 관계기관 협조 3. 피난유도 4. 사망, 부상인원 파악 및 후송 5. 재산 피해상황 파악

5. 향후 행정절차 및 안내사항

5.1 허가경과

5.1.1 사전협의(협의 취하 사업장)

5.1.2 통합허가

사업자가 배출시설등의 운영을 위한 통합허가 신청을 위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접수번호 A2023891033, 2023. 11. 07.)

5.1.3 검토진행사항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보완과정을 거쳤으며,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였다.

진행 사항	완료일	검토 결과
통합허가 신청	2023년 11월 07일	-
1차 기술검토	2023년 11월 27일	□ 완료 ☑ 보완
2차 기술검토	2023년 12월 11일	☑ 완료 □ 보완

5.1.4 보완·조정 내용

사업자에 요청한 보완사항은 시설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통합허가 검토과정 중의 기술검토결과,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 사업자 협의결과 등이 반영되었다.

구분	보완·조정 내용	보완·조정내역
1	사업장 운영형황 재검토	보완 및 오류 수정
2	PFD 및 P&ID 보완 필요	
3	물질수지 재검토	
4	최적가용기법 해당여부 및 적용내역 재검토 필요	

5.1.5 검토 항목 및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현장검토 결과, 환경전문심사원의 기술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항목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토 항목		검토 결과
서류	-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여부(업종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규모)	☑ 양호 ☐ 보완
	- 통합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지 여부	☑ 양호 ☐ 보완
	-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양호 ☐ 보완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양호 ☐ 보완
	- 수수료 납부 여부	☑ 양호 ☐ 보완
기술	- 통합공정도 작성의 적절성	☑ 양호 ☐ 보완
	-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물질수지 분석결과	☑ 양호 ☐ 보완
	- 오염물질 처리방법, 방지시설 처리효율 등 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의 기술적 적절성	☑ 양호 ☐ 보완
	- 허가배출기준안의 적절성	☑ 양호 ☐ 보완
	- 배출영향분석 입력정보, 분석방법론 등 세부요소 적용의 적절성	☑ 양호 ☐ 보완
	- 사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계획에 대한 기술적 적절성	☑ 양호 ☐ 보완
	- 그 밖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적용수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 양호 ☐ 보완

5.1.6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영향분석 - 적합('23.10.4.)

5.1.7 허가결정 및 허가서 발부('23. 12. 14.) ※허가번호 제0778-01호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대림제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통합허가 신청이 「환경오염시설법」 제7조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허가를 반려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허가를 결정한다.

5.2 향후 행정절차

○ 환경오염시설법 제7조(허가기준 등)에 따라서 검토결과를 받은 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토 결과서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	의견 제출 (있는 경우)	⇨	검토의견 통보 (있는 경우)	⇨	검토 결과서 통보
허가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의견 통보		관련 기관 통보
환경부→허가신청자		허가신청자→환경부		환경부→허가신청자		환경부→관련기관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지한다.

○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정보공개)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환경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정보에 대해 사업장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사업장은 정보의 공개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서면 통보 ⇨	공개내용 검토	수용 ⇨	정보공개 (통보일 30일 후)	위원회 심의 (소명서 수령후 3개월 이내)	정보공개 (통보일 30일 후)
환경부		사업장		허가기관		허가기관
			비수용 ⇨	소명서제출 (30일 이내)	제출 ⇨	의결 통보 ⇨
				사업장	허가기관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제30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다.

○ 환경오염시설법 제32조(기록·보존) 및 시행규칙 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에 따라 사업장은 배출 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등을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44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에 따라 사업장은 허가사항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통합허가) 제2항 및 시행령 별표2 (변경허가의 대상), 별표3(변경신고의 대상)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3 안내사항

○ 사업자는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검토결과서를 항상 직무수행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또는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관제실(통제실) 및 주요 환경오염사고 유발 시설에 자체 비상연락망 및 관할 행정기관 비상연락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본 검토결과서와 다른 경우에는 본 검토결과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을 운영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해당시설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무원(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 직원 포함)이 오염물질등의 측정(허가받은 오염물질외 항목 포함), 시설 출입・확인 등을 이행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운전자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서 제시한 활동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이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계획된 공정과 시설의 설치·운전 및 유지·관리조건, 연료·원료·폐기물 등 물질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연·원료 등 사용물질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활동을 통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허가명세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공정과 시설을 최적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제14조에 의한 개선명령처분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에 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 허가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지점 외에 대기, 하천, 토양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단 “비정상운전”(정상운전 외 운전조건의 변경 운전, 가동개시·종료, 검사·청소작업 등)시는 예외이나, “비정상운전”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운전조건 변경시의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자는 시설점검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시간 중 시설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상황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 본 검토결과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에서 제시한 주요자료(연・원료 및 투입약품 구성성분, 배관 및 설비 구성, 촉매, 방지시설 설계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기관과 협의 후 수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에 따라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일일, 매주, 또는 매월 기록·보존하고, 해당정보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허가 이후 최초 기록 보전에 대한 입력은 2024년 3월 말까지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환경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원활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내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각각의 시설에 관리번호, 시설명, 운전조건 등을 라벨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사고 발생 시 해당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운전을 즉시 중단하는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최종 조치결과는 상황이 종료된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